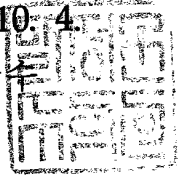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|     |      |
|-----|------|
| 의 안 |      |
| 번 호 | 1599 |

제출일자 : 2018. 10. 4

제 출 자 : 달성군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정이유

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, 세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,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보다 계획적·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설치를 명시(안 제1조)
- 나. 재정안정화기금 재원 및 조성(안 제2조~제3조)
- 다. 재정안정화기금 사용(안 제4조)
- 라.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심의(안 제5조~제6조)
- 마.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

나. 기타사항

(1) 제정 조례(안)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8. 8. 24. ~ 9. 13.(20일간)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달성군의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재원)**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의 전출금
2.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**제3조(기금의 조성)**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3년 지방세 세입액의 평균보다 15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3년 경상일반재원 세입평균액의 15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3년 평균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4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-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금의 사용)**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군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4. 공공청사의 신축 및 증축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

**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**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**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위원회 관리·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조례」에 따른 달성군재정계획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
4.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7조(회계공무원)**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
2. 기금출납원 : 재정안정화기금 담당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9조(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기금의 조성은 2017 회계연도 결산분 부터 적용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14조

제14조(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,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재정안정화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